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23.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환경노동위원회

1. 감사의 목적

국정감사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2023. 10. 10(화) ~ 10. 27(금) [18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선정기관 : 총 75개 기관

1. 환 경 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 국립환경과학원
- (3) 국립생물자원관
- (4)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5) 화학물질안전원
-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7)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9) 한강유역환경청
- (10) 낙동강유역환경청
- (11) 금강유역환경청
- (12) 영산강유역환경청
- (13) 수도권대기환경청
- (14) 원주지방화경청
- (15) 대구지방화경청
- (16) 전북지방환경청
- (17) 한강홍수통제소
- (18) 낙동강홍수통제소
- (19) 금강홍수통제소
- (20) 영산강홍수통제소

다. 산하 공공기관

- (1) 한국수자원공사
- (2) 한국환경공단
- (3) 국립공원공단
-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6) 국립생태원
- (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8) 한국상하수도협회
- (9) 환경보전협회
- (10) 수자원환경산업진흥
- (1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1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 기상청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 (1) 수치모델링센터
-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3) 수도권기상청
- (4) 부산지방기상청
- (5) 광주지방기상청
- (6) 강원지방기상청
- (7) 대전지방기상청
- (8) 대구지방기상청
- (9) 제주지방기상청
- (10) 국가기상위성센터
- (11) 기상레이더센터
- (12) 국립기상과학원
- (13) 항공기상청

다. 산하 공공기관

-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2) APEC 기후센터
- (3)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3. 고용노동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 (2) 최저임금위원회
-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다. 산하 공공기관

- (1) 근로복지공단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3) 한국산업인력공단
-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5) 한국고용정보원
- (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8) 노사발전재단
- (9) 건설근로자공제회
-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1) 한국잡월드
-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 감사반의 편성

가. 편성원칙

감사반의 편성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원(15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나. 감사반

감사반장	박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이수진 위원	
	김영진 위원	
	노웅래 위원	
	우원식 위원	rl 별 시 미 즈 rl
	윤건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	
	전용기 위원	
	진성준 위원	
	임이자 위원	
	김형동 위원	
	박대수 위원	국민의힘
	이주환 위원	
	지성호 위원	
	이은주 위원	비교섭단체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월 11일(수)	10:00	환경부	국회	
10월 12일(목)	10:00	고용노동부	국회	
10월 13일(금)		자료정리		
10월 14일(토)~15일(일)		공휴일		
10월 16일(월)	~15일(일)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지구기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화	
		현장시찰	김포국제공항	출장
10월 17일(화)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월 18일	(수)	자료정리		
10월 19일(목)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행물자원관 국립한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연산강유역환경청 연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	
10월 20일(금)	미정	현장시찰	경북 예천 (수해지역)	출장
10월 21일(토)~	~22일(일)	공휴일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월 23일(월)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회	
10월 24일(화)	10:00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회	
10월 25일(수)		자료정리		
10월 26일(목)	10:00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종합감사
10월 27일(금)	10:00	환경부 기상청	국회	종합감사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기관의 업무보고 를 청취하고 감사위원들과 증인들 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회의방식으로 진행한다.
- (2) 위원회 의결 등으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검증을 하고 증 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 (1)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한다.
- (2) 감사대상기관 증인은 기관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산 하 공공기관의 경우 상근임원)으로 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운영지 원과장을 포함한다.
-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감사 시에는 해당 중앙부처의 관련된 부서장도 증인으로 하고, 중앙부처 종합감사 시에는 해당 부처 소 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상근임원도 증인으 로 한다.
- (4) 그 밖의 일반증인은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 (5)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한다.
- (6)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신청한 위원이 사정변경 등으로 출석요 구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각 교 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서류 등의 제출요구

- (1)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 (2) 제출요구서는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한다.
- (3) 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요구한 경우에는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서면이나 전자문서 외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이메 일이나 USB 등의 방법으로 요구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5) 9.26(화) 전체회의 의결 이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갈음하여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제출요구서를 바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감사 진행절차

- (1) 감사개시선언
- (2) 감사반장의 인사
- (3) 증인선서
- (4) 감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 (5) 업무보고 청취
- (6) 질의 및 답변(신문 및 증언)
- (7)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마. 선서요령

- (1) 선서는 증인 및 감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2) 증인 및 감정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그 밖의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 (3)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한다.
- (4) 위원장은 증인 및 감정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7.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

- 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 나.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
- 다. 2023년도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 라.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종합국감 시 제출)
- 마. 2022년도 및 2023년도의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바. 각종 민원처리 현황
- 사.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 아. 그 밖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 나.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 실시경과, 주요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등을 기재한다.

9.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현장시찰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 나. 국정감사 신문 또는 질의 도중 음성 또는 음향이 포함된 영상물 방영 시 음향 제거 후 영상물 송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그 밖에 감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 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